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7.

발 의 자 : 최민희 · 김 현 · 이주희
김우영 · 손명수 · 이성운
이연희 · 민병덕 · 이원택
송옥주 · 이해민 · 한민수
황정아 · 전용기 · 박민규
조인철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, OTT 등 새로운 미디어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했음.

또한, 진흥 업무 통합에 부응하고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효과성 높은 진흥 업무(사업, 정책, R&D 지원 등)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, 미디어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화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 기관이 필요함.

이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

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7조의2 신설).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에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7조의2(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) ①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 및 법·제도 개선 등 지원
2.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·발전 및 시장 활성화 지원
3. 방송미디어 기업·사업자의 창업·성장 등 지원
4. 방송미디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
5. 방송미디어 기술의 융합·활용에 관한 사업
6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·관리·평가 및 성과 확산 등
7. 방송미디어 산업 동향 분석, 통계 작성, 정보 분석 및 서비스 발전 등에 관한 사업
8. 방송미디어 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

9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

④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, 시설, 운영 및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7조의2(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)</u> <u>①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u> <u>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</u> <u>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/u> <u>1.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 및 법·제도 개선 등 지원</u> <u>2.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·발전 및 시장 활성화 지원</u> <u>3. 방송미디어 기업·사업자의 창업·성장 등 지원</u> <u>4. 방송미디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</u> <u>5. 방송미디어 기술의 융합·활용에 관한 사업</u> <u>6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·관리·평가 및 성과 확산 등</u> <u>7. 방송미디어 산업 동향 분석, 통계 작성, 정보 분석 및 서</u>

비스 발전 등에 관한 사업

8. 방송미디어 산업 관련 국제
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
원

9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
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
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
기관 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
업

④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
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, 시설,
운영 및 제3항 각 호의 사업
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
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
률」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
는 「민법」의 재단법인에 관
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